

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

1. 법령상의 비밀·비공개 정보(법 제9조 제1항 제1호)

-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 . 대법원규칙 . 헌법재판소규칙 .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.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
업무종류/대상	비공개대상정보	비공개사유 (근거법령)
공직자재산등록및공개	- 공직자 재산등록신고관련사항 (단, 구청장, 구의원은 공개)	「공직자윤리법」 제10조 제3항, 제4항
공직자재산등록조회및심사	- 재산등록의무자금융조회.심사 관련 사항	「공직자윤리법」 제10조 제3항, 제4항
공직자병역신고및공개	- 병역사항(변동)신고서 -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	「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」제13조
통계	-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	「통계법」제33조
지방세부과징수	-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	「지방세기본법」제114조
지방세체납관리	-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으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체납정보 공개불가	- 「지방세기본법」제140조 - 동법 시행령 제107조
인감증명서보존	- 인감대장 및 인감에 관한 서류 (단, 본인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개)	「인감증명법시행령」제18조
국민기초생활보장	-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·생활 실태에 관한사항 -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·국세·지방세·토지·건물·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 사항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2조 제6항
복지자원	- 긴급복지대상자의 소득, 재산,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	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13조

업무종류/대상	비공개대상정보	비공개사유
통합관리	- 복지급여대상자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의료급여, 한부모가정, 기초노령연금, 보육료 등)의 신상정보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2조 제6항
장애인관리및지원	- 장애인복지 상담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	「장애인복지법」제33조
요보호여성상담및지도	-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 및 상담, 보호 및 치료관련 정보	「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」제19조
	-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	「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」제30조
노인복지	-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	「노인복지법」제39조의12
도시계획	-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, 주민번호 등 개인 식별정보	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제113조의2
가족보건사업	- 등록·접수된 임신부 및 불임부부지원 관련 내역	「모자보건법」제24조
건강도시사업	-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정보	「정신보건법」제42조
전염병관리	- 전염병감염자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사항	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」제74조
성병및에이즈관리	- 에이즈검사결과회보, 에이즈민원검사의뢰서, HIV양성자 발견 보고, HIV감염자 진료비 보조금	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」제7조
일차진료 한방진료	- 환자의 진료기록부 및 사본진료내역에 관한 사항 (단, 「의료법」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)	「의료법」제21조
검진및검사	-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한 검진결과	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21조

2. 안보 . 국방 . 통일 . 외교관련 정보(법 제9조 제1항 제2호)

○ 국가안전보장 . 국방 . 통일 .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업무종류/대상	비공개대상정보	비공개사유
을지연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을지연습 참가자의 조직구성, 역할 등 세부일정 - 을지연습 참가(협조)기관명 - 을지연습 사건계획 - 을지연습 사건 메시지(문서, 지령) 및 처리결과, 상황보고 	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으며 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
총무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무계획 참가자의 조직구성, 역할 등 세부일정 - 총무계획 실시 계획 	공개될 경우 총무계획의 본연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정보
민방위대편성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	공개될 경우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피시설 구조도 	공개될 경우 적의 공격 시 효과적인 대피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방위경보시설 위치 - 민방위경보시스템 세부정보 	공개될 경우 적의 공격목표가 되어 효과적인 대피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
정보통신보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장비 구성도 등 관련자료 -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운영자료 - 암호 및 음어자재 보유현황 - 통신 장비 설치현황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문서 	해킹,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
비밀기록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취인가자 성명 	공개될 경우 정보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암호자재 	비밀정보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정보보안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청사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사 경비 초소 위치 -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- 청사 순찰 일지 - 청사 경비시스템 및 방호용 CCTV위치, 장비명, 사진 	공개시 테러 및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국가의 보안목표시설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도로명주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로명 기본(안내)도 상의 국가중요시설물, 공개제한시설물 	공개될 경우 적의 공격목표가 되어 효과적인 대피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

3. 국민의 생명 . 신체 . 재산 관련 정보(법 제9조 제1항 제3호)

○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.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업무종류/대상	비공개대상정보	비공개사유
국민의 생명, 신체의 보호	-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, 수용자 명단, 주소	공개 시 가해자 및 이해당사자의 보복 등으로 인해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
	-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 식별정보	공개 시 보복 등으로 인해 개인의 생명, 신체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	-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	공개 시 가해자 및 이해당사자의 보복 등으로 인해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
	-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 도면, 구조도	공개 시 테러 및 범죄 등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,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	-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 cctv 위치	공개 시 테러 및 범죄 등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,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	-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 경비일지, 순찰일지, 경비시스템 관리일지	공개 시 테러 및 범죄 등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,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	-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 주소 및 진입경로	공개 시 테러 및 범죄 등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,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	- 보안 목표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도면, 구조도	공개 시 테러 및 범죄 등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,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
업무종류/대상	비공개대상정보	비공개사유
국민의 재산 보호	- 여권, 인감, 주민등록관리 대장	공개 시 위·변조,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	-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 내역	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	- 특정 지번의 매매가	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 내역을 추정할 수 있어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	-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	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 내역을 추정할 수 있어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
4. 재판 . 수사 . 범죄예방 관련 정보(법 제9조 제1항 제4호)

-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업무종류/대상	비공개대상정보	비공개사유
진행중인재판 관련정보	-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.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 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	공정한 심리 보장
행정심판/행정소송	-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, 답변서, 소송 진행 등에 관한 사항	공정한 심리보장 및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방지
수사 관련정보	- 수사협조 의뢰 관련 사항(범죄경력조회 등)	공정한 심리 보장
	- 공무원 범죄사건 관련 진정 . 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- 징계의결 요구사항	공정한 업무수행 및 개인에 관한 정보보호
자동차운행관련위법사항	-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한 수사관련 사항 -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자 및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자 수사관련 자료	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방지
범죄의 예방	- 청사 경비 초소 위치 -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- 청사 순찰 일지 - 청사 경비시스템 및 방호용 CCTV위치, 장비명, 사진	청사 경비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업무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

5. 감사 . 감독 . 계약 .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(법 제9조 제1항 제5호)

○ 감사.감독.검사.시험.규제.입찰계약.기술개발.인사관리.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.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업무종류/대상	비공개대상정보	비공개사유
감사	- 불시감사, 조사, 단속, 직무감찰 등의 대상, 시기, 방법 등	사전에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
	- 불시감사, 조사, 단속, 직무감찰 업무 개선안	향후 같은 유형의 점검에 대한 개선 의견으로 감독.지도점검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
	- 문답서 . 확인서 등 감사 .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	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
	- 인사신문고, 공무원 전용 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	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
입찰계약	-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- 입찰자 식별 정보	입찰이 완료되기 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	- 예정가격조서, 계약내역 사양서	입찰이 완료되기 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인사관리	-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자료 - 승진심사 및 다면평가자료, 승진위원회의 심사내용 - 직원 등의 임면, 복무, 급여,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정보 - 임용, 승진, 전보 등 인사 관련 사항	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	- 지역개발, 재개발, 재건축 등 정책수립 및 집행 관련 업무의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	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
업무종류/대상	비공개대상정보	비공개사유
직원단체 교섭방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	사용자와 피사용자간의 문제로 교섭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위원회 회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- 회의 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-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	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
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무원특별임용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결과 등 내부결정사항 	내부의사검토과정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초래

6. 이름 .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(법 제9조 제1항 제6호)

-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.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.
- 가.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
- 나.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
- 다.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- 라.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. 직위
- 마.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. 직업

업무종류/대상	비공개대상정보	비공개사유
공무원	- 개인 휴대전화번호, 자택주소, 개인 이메일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신용카드번호, 통장계좌번호, 가족관계	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 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
	- 범죄사실 기록, 납세내역, 재산 및 채무현황, 급여 및 수당내역, 복지포인트 내역 및 사용내역	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	-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	공개될 경우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상업 목적 등에 부당하게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
	- 퇴출후보자 명단	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 당할 우려가 있는 정보
	- 공무원 범죄처리결과, 징계내역	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공개될 경우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정보

업무종류/대상	비공개대상정보	비공개사유
공인 (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)	- 개인 휴대전화번호, 자택주소, 개인 이메일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신용카드번호, 통장계좌번호, 가족 관계, 학력	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
	- 범죄사실 기록	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정보
	- 납세내역	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	- 재산 및 채무 현황 - 급여 및 수당 내역	공개 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개인정보보호	- 개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통장계좌번호, 급여, 학력, 직업, 경력, 활동사항, 사상 . 양심 . 종교에 관한 정보	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
	-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	공개될 경우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상업 목적 등에 부당하게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
	- 재산상황(과세내역, 납세증명서)이나 개인에 관한 평가 기록 등	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	- 보조금(보상금, 지원금) 신청서 및 지급서류 중 개인 인적사항, 계좌번호, 재산상황, 보조금(보상금, 지원금) 지급액 등	공개 될 경우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	- 구인 . 구직 업무와 관련하여 구직자의 신상자료 (구직표, 자격증 소지 등)	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	- 각종 영업 허가 및 신고, 업소 개설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자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	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
	- 행정처분 대상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	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	- 진정 . 탄원 .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	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

7. 법인의 경영 . 영업비밀 정보(법 제9조 제1항 제7호)

○ 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 등"이라 한다)의 경영 .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.

가.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.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
나. 위법 .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
업무종류/대상	비공개대상정보	비공개사유
법인, 경영 . 영업상 비밀	- 설립허가증 중 대표자 자택 주소	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는 정보로 6호에 의해 비공개 가능
	-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	공개 시 법인의 경영상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	- 개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경영 영업상의 정보 - 법인의 영업규모 및 시설내역 등	공개 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
보조금지원단체	-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의 자금.인사, 영영방침, 신용, 경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	공개 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
단체, 기업, 위탁업체, 개인 등의 영업상 비밀	-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	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	-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	경영 .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	- 공사도급계약서, 핵심산업기술, 내부자금, 인사관리 내역	경영 .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8. 부동산 투기 .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(법 제9조 제1항 제8호)

-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.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업무종류/대상	비공개대상정보	비공개사유
주택건설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택건설사업 계획 및 관련 도면 - 주택건설사업 계획 검토 결과 	<p>해당 사업 공표 전에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(사안 종료 후 공개가능 정보)</p>
도시개발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및 관련 도면 - 재건축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및 관련 도면 - 개발제한구역 세부사업계획 및 관련 도면 - 유통단지 조성사업 관련 세부 계획 및 관련 도면 	<p>해당 사업 공표 전에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(사안 종료 후 공개가능 정보)</p>
지역개발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개발 계획 및 관련 도면 - 시설조성 계획 및 관련 도면 	<p>해당 사업 공표 전에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(사안 종료 후 공개가능 정보)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관련 도면 - 역세권 개발계획 및 관련 도면 	<p>해당 사업 공표 전에 공개 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(사안 종료 후 공개가능 정보)</p>